

2016.12.08

문의사항
박재호 관세사 T/ 02-6011-3026 메일/ jhpark9@esein.co.kr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입안예고’ 안내

1. 제정 사유

관세청은 통관과정에서 수출입물품의 적법한 검사 시 불가피한 물품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당한 수출입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바, 관세법 제 246조의 2에서 정한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규정 마련을 위하여 **『손실보상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 입안예고** 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 보상대상

적법한 물품검사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경우 검사 결과 정상화물로 판명되어 화주의 손실발생 책임이 없는 경우

✓ 청구자

손실된 수출입물품의 화주가 검사세관에 보상 청구

✓ 청구기한

- 여행자휴대품 : 입출국일로부터 **7일**
- 특송·우편물 : 수취일로부터 **7일**
- 일반수출입화물 : 반출일로부터 **15일**

2016.12.08

문의사항
박재호 관세사 T/ 02-6011-3026 메일/ jhpark9@esein.co.kr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입안예고’ 안내

2. 주요 내용

✓ 청구방법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검사세관에 제출

✓ 손실보상심의위원회

- 본부세관별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세관(권역 내 포함)에 접수된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심의
- 세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 포함 7명 이내로 하며,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구성
- 제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의결로 결정

✓ 보상금 지급

-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받은 검사세관에서 청구인에게 **결정사항 통보 및 보상금 지급**
- 심의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통보
- **현금으로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분할 지급

2016.12.08

문의사항
박재호 관세사 T/ 02-6011-3026 메일/ jhpark9@esein.co.kr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입안예고’ 안내

3. 의견제출 방법

- ✓ 제출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 ✓ 담당자 : 윤동주 사무관 (☎ 042-481-7851)
- ✓ 제출기한 : 2016.12.21
- ✓ 제출방법
 - E-Mail : moonsh@customs.go.kr
 - 팩스 : 042-481-7819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안)

관세청고시 제2016- 호 ('16. .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손실보상 대상)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6조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손실발생의 원인이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제3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 ① 법 제246조의2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별표1의 세관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세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세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세관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1. 소속세관의 5급이상 공무원

2. 관세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인 자
 4. 세관 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본부세관의 운영지원부서장이 한다.

제4조(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① 법 제246조의2에 따라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품검사를 수행한 세관공무원의 소속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는 물품이 보세구역, 통관우체국, 자유무역지역내에 있거나 보세구역, 통관우체국, 자유무역지역에서 반출된 이후에는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하여야 한다.
1. 여행자휴대품 : 여행자 입출국일로부터 7일
 2. 특송화물 · 우편물 : 물품을 수취한 날로부터 7일
 3. 일반수출입화물 : 물품이 반출된 날로부터 15일

③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가 있으면 세관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신청을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

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서에 결정 내용을 적어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

2. 보상금 지급 청구를 각하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각하 통지서

⑥ 보상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⑦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손실예상검사 사전신청) ① 물품검사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손실이 예상되는 검사의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사전 신청하고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검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구두로 사전 보고하여 검사한 후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 및 승인받아 시행한 검사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심의시 원칙적으로 검사자의 과실이 없는 적법한 검사로 한다.

제6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심의가 필요한 경우 기일을 정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기일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기일 7일 전까지 제3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손실보상심의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관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 사실조사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심의 안건의 청구인인 경우
2. 위원이 심의 안건의 청구인과 3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심의 안건 청구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의 청구인인 법인의 임직원인 경우

② 청구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세관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제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9조(비밀 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6- 호, '16. .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별표1]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설치 기관 및 대상업무

설치기관	심의 대상
인천세관	인천세관 및 권역내 세관 청구건
서울세관	서울세관 및 권역내 세관 청구건
부산세관	부산세관 및 권역내 세관 청구건
대구세관	대구세관 및 권역내 세관 청구건
광주세관	광주세관 및 권역내 세관 청구건
평택세관	평택세관 청구권

■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보상금 지급 청구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손실개요	손실내용 및 신청이유		
	손실액 산출기초		
	손실금액(청구금액)	금	원
※ 손실금액 지급받을 계좌번호 :			

「관세법」 제246조의2 및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 세관장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보상금 지급 청구 (일부·전부) 승인 통지서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보상 결정 사항	보상원인	
	보상금액(청구금액)	
	보상방법	
그 밖의 사항		

「관세법」 제246조의2 및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3항에 따라
귀하의 손실보상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보상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 문의: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전화번호)

○ ○ 세관장

직인

■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각하 통지서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보상 결정 사항	결정 내용	
	결정 이유	

「관세법」 제246조의2 및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귀하의 손실보상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기각·각하)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 문의: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전화번호)

○ ○ 세관장

직인

■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손실예상검사 사전 신청서

검사자	소속	성명
	검사예정일시	
물품명		
수입화주		
관련 근거번호		
손실예상 검사사유		
검토의견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